

식품위생법

[시행 2024. 7. 24.] [법률 제20140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"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"에서 "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"로 상향 조정하되,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, 정도, 기간,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.

<법제처 제공>

개정문

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(인)

2024년 1월 23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(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) 이상민

⊙ 법률 제20140호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"를 "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"제2항에"를 "제3항에"로 한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
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
3.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